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3. 6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2월 22일

나. 발 의 자 : 윤준용 의원 외 9명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3. 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윤준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신설
(안 제2조제2항제11호)
-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(안 부칙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
 - 2017년 7월 1일부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현재 공영 노상주차장 4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2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으로 상향하는 것임.
- 「주차장법」 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
 - 주차요금 외의 사항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이 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인상을 통한 무단주차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짐.
- 그러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상향조정은 형평성과 차주의 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아울러 도심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전용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준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2월 일

발 의 자 : 윤준용 의원 외 9명

1. 제안이유

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무단주차하는 차량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제기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, 무단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신설

(안 제2조제2항제11호)

나.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(안 부칙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주차장법」 제2조(정의), 제8조의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,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, 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
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
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(정의)
-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7. 2. 7. ~ 2. 13.) : 의견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0호 중 “제5조”를 “제5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11호를 신설한다.

11. 제1호와 제10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경우 점용 주차면 1구획당 공영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가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,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.</p> <p>다만, 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10. <u>제5조</u>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사람이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제5조의2</u>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사람이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</p> <p>11. 제1호와 제10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경우 점용 주차면 1구획당 공영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